



영아기 집중투자

# 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·확대시행 안내

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,  
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!

아동수당도 1년 더(만 8세까지) 지급됩니다!

신설

첫만남이용권

- 지급대상** '22.1.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
- 지원내용**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  
※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(아동발달지원계좌) 지급
- 사용기간** 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- 신청방법** 방 문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
온라인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 
※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(온라인에서도 가능)

영아수당

- 지급대상** 만0-1세 아동('22년생부터)
- 지원내용** 현금(가정양육시) 또는 바우처(어린이집,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)  
※ 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(서비스 간 변경 가능)
- 지원시기** 0~23개월 /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
- 신청방법** 방 문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
온라인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 
※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(온라인에서도 가능)  
※ 온라인 신청은 '22.1.5일부터 신청 가능

확대
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“국민행복카드” 지원금액 인상

임신·출산	2021년	2022년
한명	60만원	100만원
두명 이상	100만원	140만원

\* (지원기간) 1 → 2년, (영유아진료비) 1세미만 → 2세미만  
(지원내용) 임신·출산 관련 의료비 → 모든 의료비

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

- 아동수당**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,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('18.9.~)
- 연령확대** 만7세 미만 아동 →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('22. 1월~)  
※ '22.1월 기준만 8세 미만 아동('14.2.10이후 출생아)  
※ '14.2.1.~'15.3.31. 출생아동은 '22.4월에 '22.1~3월분 소급지급
- 신청방법** 방 문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
온라인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 
※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